발간등록번호
11-B552644-000001-10

2024 음악산업백서

MUSIC INDUSTRY WHITE PAPER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제4절 법제도 환경

1. AI 커버곡 등 AI 영상 확산에 따른 법적 문제

가. AI 커버곡 현상

일반적인 커버곡이 다른 가수의 곡을 자신만의 음악 스타일로 재해석해 직접 부르는 것이었다면, AI 커버는 한 단계 더 나아가 A가 부른 곡을 마치 B가 부른 것처럼 만드는 것이다. 이를 테면 김광석이 부르는 비비의 〈밤양갱〉 등 AI 커버가 그것이다. 현재 유튜브에 '밤양갱 커버', '밤양갱 AI'를 검색하면 수많은 가수들의 목소리를 이용한 AI 영상이 매우 많음을 알 수 있다. '원곡 뛰어넘었다는 밤양갱 커버 TOP 6'라는 제목의 유튜브 콘텐츠[35]에는 박명수, 양희은, 이수현(악뮤), 오혁, 성시경, 김광석이 실제 직접 부르는 것처럼 만든 커버 숏폼 동영상이 올려져 있고 해당 영상은 원고 작성일 현재 조회수 288만 회를 기록하고 있다. 팝스타 브루노 마스(Bruno Mars)가 커버한 뉴진스의 〈Hype Boy〉 영상은 유튜브에 공개된 지 2주 만에 100만 조회를 돌파했다고 한다.

AI 커버곡의 원리는 기존 음원에서 원가창자의 음성을 들어내고 AI 학습을 통해 도출된 다른 가수의 음성을 입혀 완성하는 것이다. AI 프로그램을 통해 각자 고유한 가수들의 목소리가 가지는 파형을 이미지처럼 학습시키는 것이다. 커버하고자 하는 곡의 가수 목소리와 듣고 싶은 가수 목소리를 학습시키고 원래의 멜로디에 그 학습된 목소리를 얹는 간단한 방법이다. 유튜브 또는 인터넷 사이트에는 누구나 프로그램을 활용해 10분이면 AI 커버곡을 완성할 수 있다는 내용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36]

나. 저작권 문제

그런데 작곡가, 작사가가 보유한 음악저작권과는 달리, 실연자인 가수는 해당 가수가 실제로 부른 실연(노래) 그 자체에 대해서만 저작인접권을 행사할 수 있다. AI가 생성한 '커버' 음원에서 가창 부분은 특정 가수가 부른 실연 그 자체가 아니다. AI가 특정 가수가 노래한 음원 데이터를 심층학습(deep learning)한 다음 이를 기반으로 AI가 생성해 낸 것일 뿐이

35) https://www.youtube.com/shorts/blfH_b3l8Kg
36) https://www.youtube.com/watch?v=4Dup0psxSHk

다. 따라서 AI가 '커버'한 음원은 가수가 실제로 부른 노래 그 자체가 아니므로, 원실연자인 가수의 저작인접권(복제권이나 동일성유지권)이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AI '커버' 음원에 대하여 가수는 이른바 '퍼블리시티권' 또는 일반적 인격권으로서 성명권 또는 음성권 침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자신의 음성이 AI 커버에 사용된 가수는 헌법상 인격권의 일종인 음성권 또는 성명권 침해를 주장할 여지가 있다. 또한 음성은 소위 퍼블리시티권으로 볼 수 있고, 우리 법원의 판례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37]에서 이를 보호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권리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AI가 심층학습을 할 때 음원 데이터를 허락 없이 이용하였다면 AI 개발자는 음악저작권(작사가 및 작곡자의 권리)이나 저작인접권(음반제작자의 권리) 침해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이 음악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AI 커버곡에서 볼 수 있듯이, 실연자의 입지마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음악을 생성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 음악의 가창 또는 연주도 심층학습을 통해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음원을 만들어내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에 저명한 저작권법 학자에 따르면 〈밤양갱〉 AI '커버' 음원이 예고하는 것 중에 보다 큰 문제는 실연자들의 이른바 '기술적 실업'(technological unemployment)이라는 것이다.[38]

2. 음악출판사와 AI 서비스제공업체 사이의 분쟁[39]

미국 음악출판사인 유니버설 뮤직퍼블리싱그룹 등이 AI 서비스제공업체 앤트로픽(Anthropic) 사를 상대로 2023년 10월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Anthropic사가 서비스 중인 클로드(Claude) AI의 개발 및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원고들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의 가사(lyrics)가 무단으로 복제, 2차적 저작물 작성, 전시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되었다는 것이다.

Anthropic은 오픈(Open) AI의 전직 임원이 설립한 회사이고, Claude는 대형언어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 기반의 대화형 AI로서 구독 기반의 챗봇 형태 및 유료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형태로 제공되는 상업적 서비스라고 한다.

3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함.
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38)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7070

39) 저작권위원회, 〈저작권동향〉 (2023 제7호) 참조.

Claude 챗봇에 특정 악곡의 가사에 관한 질의를 입력하면 해당 곡의 가사가 거의 그대로 출력되고, 심지어 직접적인 요청이 없더라도 특정 곡의 가사가 거의 동일한 형태로 출력된다고 한다. 예컨대 "Buddy Holly의 죽음에 관한 곡을 써줘"라고 입력하면, 돈 맥클린의 〈아메리칸 파이(American Pie)〉의 가사가 거의 그대로 출력된다던가, "리너드 스키너드(Lynyrd Skynyrd) 스타일로 시를 써줘"라고 입력하면 해당 밴드의 곡인 〈스위트홈 알라바마(Sweet Home Alabama)〉 가사가 거의 일대일로 대응하는 수준으로 출력되는 식이라고 한다.

음악 출판사 측은 Anthropic사가 Claude AI 모델의 학습 및 전처리/파인튜닝 과정에서 음악 출판사들의 음악저작물 가사를 무단 복제하였고, 질의에 대한 응답 결과에서 위 음악저작물들의 가사를 복제, 전시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 음악출판사들이 보유 또는 관리하는 음악저작물(가사)에 관한 저작권을 직접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원고들은 음악저작물에 대한 라이선스 시장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피고와 같은 AI 모델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많은 웹사이트들은 정당하게 라이선스를 통해 음악저작물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음악저작물을 라이선스 없이 복제하고 배포함으로써 Anthropic사는 음악출판사와 음악 작사가가 가사 저작물로부터 돈을 벌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Anthropic사 측은 일단 미국 테네시주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관할법원을 피고 측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각을 구하였지만, 어느 법원에서 심리하든 피고 측은 공정이용 항변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I 기술을 훈련하는 데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라이선스 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직 뚜렷한 선례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이 이러한 저작물의 이용유형을 공정이용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 또는 미국 의회와 미국 저작권청의 추가적인 입법과 규제가 나타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3. EU AI Act 통과와 한국 음악산업에 미치는 영향

가.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 통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21년 4월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법안(AI Act: Artificial

Intelligence Act)을 제정할 것을 EU 이사회와 의회에 제안했다. 이에 대하여 EU 이사회는 2022년 12월 6일 집행위원회의 제안에 대한 수정안을 채택했고, 유럽의회도 2023년 6월 14일 집행위원회 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EU 집행위원회, 이사회, 의회는 위 수정안에 대하여 삼자 협상을 진행하였고 우여곡절 끝에 2023년 12월 마침내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삼자 합의안은 자구 수정 등 기술적인 절차를 완료하고, 의회의 승인 등을 거쳐 2024년 3월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법안으로 탄생하였다.

AI 법안은 법(regulation) 형식이므로 지침(directive)과 달리 유럽의회에서 가결되어 시행되면 회원국들의 개별 입법을 요하지 않는 것이고 27개국 유럽연합 국가들의 승인을 거쳐 발효되며, 일부 금지 조항은 발효 뒤 6개월부터 적용된다. 이후 해당 법안은 단계적으로 도입돼 2026년 이후엔 전면 시행된다고 한다.

EU 인공지능법은 주로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는 공급자 및 인공지능 시스템 배포자(사용자)를 규제한다. 구체적으로, (i) 인공지능 시스템을 사용하는 EU 내 기관, (ii) EU 내 인공지능 시스템 수입업체, 유통업체 또는 제조업체, (iii) 인공지능 시스템을 EU 시장에 출시하는 EU 내외 공급자, (iv) 해당 결과물이 EU 내에서 사용되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EU 내외 공급자 및 사용자 등이 규제 대상이다. 이에 따라 EU 인공지능법은 EU 시장에 인공지능 시스템을 출시하는 역외 공급자에게도 적용된다. 따라서, EU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외국 기업이 EU 시장에서 판매되는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경우, 해당 기업은 EU 인공지능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40]

EU AI Act는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시스템을 위험도에 따라 ① 금지되는 인공지능(Chapter II), ② 고위험 인공지능(Chapter III), ③ 투명성 의무가 부여되는 인공지능(Chapter IV), ④ 범용 인공지능 모델(Chapter V)의 4종류로 나누어 인공지능 시스템 공급자 등의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그 외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해서는 업계 내에서 자율적으로 각자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제 기관에 부여되는 의무사항을 규정한다(Chapter X).

고위험 등급으로 분류되는 의료·교육을 비롯한 공공 서비스나 선거·핵심 인프라·자율주행 등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할 때는 사람이 반드시 감독하도록 하고 위험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범용 인공지능(AGI: 사람과 유사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지능을 갖춘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명성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범용 인공지능 개발 업체들은 유럽연합의 저작권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인공지능의 학습과정에 사용한 콘텐츠를 명시해야 한다. 이 밖에도 해당 법안은 딥페이크 영상이나 이미지는 '인공지능

40) https://artificialintelligenceact.eu/

으로 만든 조작 콘텐츠'라는 점을 표기하도록 했다.

나. 음악 콘텐츠산업이 주목해야 할 조항

음악 콘텐츠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챗지피티(ChatGPT) 등 범용 AI 모델(general purpose AI models)의 제공자(provider)에게 '투명성 의무'와 '저작권 보호 의무'를 부과하였다는 점이다.

즉, 범용 AI 모델 제공자는 범용 AI 모델의 훈련·시험 과정과 평가 결과를 포함해 모델의 기술 문서를 작성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EU 저작권법을 준수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범용 AI 모델의 학습 과정에서 사용된 콘텐츠에 대해 정해진 양식에 따라 충분히 상세한 요약(a sufficiently detailed summary)을 공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41]

EU AI법에는 AI 시스템 제공자가 저작권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고 이를 위한 투명성 요건도 도입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생성형 AI 학습에 사용되는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음악 콘텐츠 저작권자들은 EU 저작권 지침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더 쉬워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학습에 사용된 콘텐츠에 대한 '충분히 상세한 요약'을 제공하라는 규정을 통해 음악 저작권자들은 자신의 콘텐츠 학습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대한 허용과 거부가 쉬워져 AI 시스템 제공자들에게 정당한 대가 요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41)

CHAPTER V GENERAL-PURPOSE AI MODELS
Section 2
Obligations for providers of general-purpose AI models
Article 53

Obligations for providers of general-purpose AI models
1. Providers of general-purpose AI models shall:
(a) draw up and keep up-to-date the technical documentation of the model, including its training and testing process and the results of its evaluation, which shall contain, at a minimum, the elements set out in Annex XI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it, upon request, to the AI Office and the national competent authorities;
(b) draw up, keep up-to-date and make available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to providers of AI systems who intend to integrate the general-purpose AI model into their AI systems. Without prejudice to the need to respect and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or trade secrets in accordance with Union and national law, the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shall:
(i) enable providers of AI systems to have a good understanding of the capabilities and limitations of the general-purpose AI model and to comply with their obligations pursuant to this Regulation; and
(ii) contain, at a minimum, the elements set out in Annex XII;
(c) put in place a policy to comply with Union copyright law, and in particular to identify and comply with, including through state of the art technologies, a reservation of rights expressed pursuant to Article 4(3) of Directive (EU) 2019/790;
(d) draw up and make publicly available a sufficiently detailed summary about the content used for training of the general-purpose AI model, according to a template provided by the AI Office.

4. 숏폼 콘텐츠에서 음악 이용에 따른 법적 문제

가. 숏폼 동영상 플랫폼의 음악 이용 구조

틱톡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숏폼 동영상 플랫폼 환경에서는 짧은 동영상에 음악을 배경으로 추가해서 올리는 경우를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다.

음악 저작권 소유자의 허락 없이 인스타그램 스토리 또는 릴스에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추가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인스타그램 자체 인앱 라이브러리에서 저작권 처리된 음악을 선택하여 동영상에 추가할 수 있어 개인 이용자는 따로 저작권자로부터 이용권한을 얻지 않아도 된다.

인스타그램의 음악 라이브러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42]

Instagram에서 라이선스가 부여된 음악 라이브러리에 액세스하기

권리 보유자와의 계약

Meta는 라이선스가 부여된 음악 라이브러리의 사용 가능한 음악 권리 보유자와의 계약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계약은 아티스트와 싱어송라이터 및 이들의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체결되었습니다.

Meta 라이브러리의 음악은 개인적이고 비상업적인 용도로 사용 가능한 음악입니다.

음악 라이브러리에 대한 제한된 액세스

라이선스가 부여된 라이브러리의 음악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특정 비즈니스 계정 및 특정 유형의 게시물은 해당 라이브러리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라이선스가 부여된 음악은 일부 국가나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이선스가 부여된 음악 라이브러리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없는 계정의 경우 Meta의 사운드 컬렉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Meta의 사운드 컬렉션 정보

14,000여 개의 노래와 사운드로 이루어진 사운드 컬렉션은 저작권료 부담 없이 릴스와 Instagram 스토리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운드 컬렉션의 콘텐츠는 광고와 같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스토리에서 위로 살짝 밀고 음악 스티커를 선택하거나 릴스 카메라에서 오디오 아이콘을 누르면 이 음악 라이브러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틱톡도 인스타그램과 유사하게 자체 뮤직라이브러리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2) https://help.instagram.com/402084904469945/?cms_platform=iphone-app&helpref=platform_switcher

Commercial use of music on TikTok

When you post content that promotes a brand, product, or service, we recommend that you only use music from our Commercial Music Library, as it's pre-cleared for commercial use. This is because the licenses we hold for music outside of the Commercial Music Library don't cover the commercial use of music in content.

If you decide to use an original sound or music from outside of our Commercial Music Library, you must agree to our Music Usage Confirmation when the content disclosure setting is turned on. This confirms that there's no copyright-protected music in the video or that you've obtained and paid for all necessary licenses to use the music.

위와 같이 동영상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조성한 뮤직라이브러리에 포함되지 않은 음악을 이용하려면 가급적 오디오정글(Audio Jungle) 또는 아트리스트(Artlist)와 같은 웹사이트에서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음악을 찾아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쇼폼 동영상 플랫폼은 가급적 많은 음악을 이용자들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들과 포괄적인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나. 틱톡과 유니버설 뮤직의 라이선스 재계약을 둘러싼 분쟁

세계에서 가장 큰 음악 레이블 중 하나인 유니버설 뮤직(Universal Music)은 틱톡(TikTok)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24년 1월 말 계약 종료를 앞두고 양 회사 사이의 새로운 라이선스 계약조건에 관한 협상이 2023년경부터 진행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라이선스 계약조건에 대한 협상이 실패하자, 테일러 스위프트(Taylor Swift)와 드레이크(Drake)와 같은 유명 아티스트의 곡들이 틱톡에서 제외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유니버설이 주장하는 계약 협상의 쟁점은 적절한 보상과 인공지능 생성 음악의 유해성 문제였다.[43] 유니버설은 우선 인공지능이 생성한 음악이 인간 아티스트를 위한 로열티 풀(royalty pool)을 대량으로 희석하고 있는데, 틱톡은 유니버설 측이 제안한 '아티스트 중심' 모델을 포함한 대체 로열티 모델 채택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하였다. 틱톡이 AI 생성 음악으로 플랫폼을 '홍수'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 AI가 생성한 음원을 직접 만들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는 주장이었다. 한편, 유니버설은 틱톡이 아티스트와 작곡가에게 다른 플랫폼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것의 일부만 지불한다고 비난하는 한편, 틱

43) https://apnews.com/article/universal-music-tiktok-umg-ai-19a1e3fb72356d1ea987b21d65b09452

톡이 인공지능 생성 음악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아티스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에 대하여 틱톡은 유니버설이 아티스트와 작곡가의 이익보다 '욕심'을 앞세우고 있다고 반발하였다. 급기야 라이선스 계약이 종료된 이후 2024년 2월 1일 유니버설의 음악 라이브러리가 틱톡에서 모두 제거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 유니버설 카탈로그에 수록된 노래가 담긴 수천 편의 동영상이 무음 처리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몇 개월간의 재협상 끝에 유니버설과 틱톡이 새로운 라이선스 계약 체결 합의를 하였다.[44)45)]

위 합의에 따라 틱톡 이용자들은 빌리 아일리시와 아리아나 그란데와 같은 인기 있는 아티스트들의 음악을 담은 비디오를 다시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틱톡은 아티스트들에게 '더 높은 로열티(enhanced fees)'를 지급하겠다고 합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정확한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나아가 두 회사는 인공지능(AI)에 대응하여 '인간의 예술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하고, 허가받지 않은 AI가 만들어낸 음악은 틱톡 플랫폼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 시사점

유니버설 뮤직과 틱톡과의 분쟁은 일단 유니버설의 승리로 귀결된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인공지능이 생성한 음악이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되고 그것이 기존 음악을 대체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틱톡, 인스타그램 또는 유튜브 등과 같은 동영상 플랫폼에서 많은 라이선스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기존 음악 라이브러리 운용을 꺼릴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상황이 되면 기존 음악저작권자의 협상력이 약화할 가능성도 크다고 할 수 있다.

44) https://www.latimes.com/business/story/2024-05-02/artists-from-universal-music-group-are-heading-back-to-tiktok-as-new-licensing-deal-reached

45) https://www.marketscreener.com/quote/stock/UNIVERSAL-MUSIC-GROUP-N-V-127080831/news/TikTok-and-Universal-resolve-dispute-over-music-46624125/

5. 음악영상물 등급분류 문제

가. 음악영상물 등급분류제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음산법’) 제17조에 의하면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하는 자는 해당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화비디오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원래 영상물등급분류제도는 영화비디오법에 규정된 것으로, 비디오물의 경우 해당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해당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서 비디오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이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기계·전기·전자 또는 통신장치에 의하여 재생되어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음악영상물’이라 함은 음원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하여 해당 음원에 영상이 포함되어 제작된 것을 말하며 음악의 실연(實演)에 대한 영상물을 포함하는데, 주로 뮤직비디오 또는 음악공연실황영상물과 같은 음악 콘텐츠를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된 영상물을 말한다. 이 역시 영화비디오법상의 비디오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화비디오법상의 등급분류를 받도록 한 것이다.

나. 음악영상물 등급분류 개선을 위한 음산법 개정안

임종성 의원과 이용 의원은 2023년 9월 22일 음악영상물 등급분류 개선을 위하여 음산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하였다.

제안 이유를 보면 현재 국내외 음악산업의 특성상 음원 발매와 동시에 음악영상물 등을 통한 적시 홍보가 필요하고 그 유통 속도가 빠른 음악산업의 특성상, 사전등급분류 제도는 유통 지연, 해외 서비스제공자와의 차별 문제, 보수적인 등급분류 등으로 현재의 음악산업 유통에 과도한 규제로 지적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음악영상물 등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음악영상물 등의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지정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가 음악영상물 유통 전에 자체등급분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를 통해 자체등급분류 지정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여 음악영상물 등에 대한 사전등급분류방식에 따른 음원산업 유통과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다. 해설

임종성 의원과 이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은 음악영상물(뮤직비디오 및 공연실황 영상 등)에 대해서도 온라인비디오물(2023년 시행) 및 게임물의 경우와 같이 등급분류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의 등급분류로 대체할 수 있는 '자체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음원 발매와 동시에 음악영상물 등을 통한 적시 홍보가 필요함에도 이러한 등급분류 절차로 인해 홍보·유통 등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해외 서비스제공자와의 차별 문제 및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보수적인 등급분류 등을 이유로 현행의 등급분류제도가 음악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다만 음악영상물 등은 일반적인 영상물에 비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고, 음악 콘텐츠 시장 내의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른바 노이즈마케팅 등의 목적으로 선정성·폭력성 등 유해 요인이 음악영상물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는 개정안과 같이 모든 개별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하겠다.[46]

6. 해외 영화에 삽입된 한국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료 징수 문제

가. 사건 개요

영국 록 밴드 퀸의 역사를 영화화한 작품 〈보헤미안 랩소디〉에는 31곡의 음악저작물(이하 '이 사건 음악저작물')이 삽입되어 영상화되었다. 20세기 폭스는 이엠아이 엔터(EMI Ent)로부터 미국과 미국령 내에서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공연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그와 같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받았으며, 미국 외 지역에서의 공연에 관해서는 '해당 국가의 관례적 관행과 관례적 비용의 지불에 따른다'고 약정하였다.

한국 영화배급업체인 피고는 20세기 폭스 코리아로부터 〈보헤미안 랩소디〉를 배급받은 뒤 이를 공개 상영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신탁 관리하고 있는 영국음악저작권협회(Performing Right Society for music, 이하 'PRS')와 상호관리계약을 맺고

46) 음악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2023. 1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연호).

있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측은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공연 사용료와 관련한 협의를 피고 측에 요청하였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는 해당 영화를 공개 상영하였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공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국 영화배급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법원의 판결 내용

1) 한국 영화배급업체의 공연권 침해 여부 판단(긍정)

피고가 〈보헤미안 랩소디〉를 한국영화관에서 공개적으로 상영한 행위는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공연'한 행위[47]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피고가 PRS나 원고로부터 위 공연을 허락받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공연 행위는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한 공연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공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한국 영화배급업체가 음악저작물의 공연 허락을 받았는지 여부 판단(부정)

20세기 폭스와 EMI와의 이용 허락 약정에 따르면 20세기 폭스가 권한을 부여받은 지역적 범위는 미국과 미국령으로 제한될 뿐 그 외 지역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미국 외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관례적 관행이나 관례적 비용의 지불 방식에 따르도록 하여 미국 외 지역에서는 이용 허락 약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20세기 폭스는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대하여 대한민국 내 공연을 허락할 권한이 없으며, 피고 또한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공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미국 외 지역(호주, 포르투갈, 스페인 등)에서 PRS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이 삽입된 영화가 공개 상영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저작권신탁관리단체들이 공연 사용료를 별도로 징수하여 이를 PRS에게 분배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도 영화에 삽입된 음악저작물의 공연사용료 징수 근거 규정(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제34조 제2항)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등 이러한 규정이 해외 수입영화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따라서 국내에서 공개 상영되는 수입 영화를 공개 상영하는 영화관 사업자들에게 그 영화작품에 삽입된 음악의 공연이 이미 허락되었다고 보거나 공연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관례나 관행이 존재한다고

47) 저작권법 제2조 제3호: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實演)·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3) 대한민국 저작권법의 영상저작물 특례 규정 적용 가능 여부 판단(부정)

국제사법 제24조[48]에 따라 침해가 일어난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을 준거법으로 한다면, 특약이 없는 경우 저작권자인 EMI 측이 20세기 폭스로 하여금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영화로 영상화하는 것을 허락한 경우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음악저작물이 포함된 영화를 공개 상영하는 것 또한 허락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그러나 이미 EMI 측과 20세기 폭스의 이용허락 약정상 지역적 범위를 미국 및 미국령 내로 분명하게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의 영화 공개상영은 허락의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특약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한국 저작권법 제99조는 본 사안에 적용되지 않는다.

4) 해외영화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에게 공연사용료 지급 의무도 없다고 볼 수 있는지(부정)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저작물 이용자들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법원에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해석되지 않는다. 따라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사용료의 요율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 해설

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은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2나2020335)에 계류 중이라서 아직 최종 확정된 법원의 결론은 아니다.

그러나 관련 업계는 이번 소송을 영화 삽입곡의 저작권료에 대한 '파일럿 소송'으로 보고 있고, 피고 CGV의 패소가 확정되면 〈보헤미안 랩소디〉를 상영한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 다른 영화관을 물론 다른 외국 영화에서까지 줄소송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CGV를 필두로 국내 영화관들은 2심이 어떻게 판가름 날지 주시하고 있다.[49]

48) 국제사법 제24조(지식재산권의 보호)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그 침해지법에 의한다.[2022. 1. 4. 개정되기 전 법률]
49)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N000125D32E305F2

한국에서 제작된 영화의 경우 한국저작권법 제99조[50]가 적용되어 저작권자 영상화를 영상물 제작자에게 허락한 경우 따로 특약이 없으면 영상물 제작 및 이용(공연 포함)에 필요한 권리를 영상물 제작자에게 허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특례조항이 수입 영화에도 적용될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1심 법원은 국제사법에 따라 침해가 일어난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을 준거법으로 한다면, 저작권자인 EMI 측이 20세기 폭스에게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영화로 영상화하는 것을 허락하고 따로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한국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어 음악저작물이 포함된 영화를 공개 상영하는 것 또한 허락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그러나 이미 EMI 측과 20세기 폭스의 이용허락 약정상 지역적 범위를 미국 및 미국령 내로 분명하게 한정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에서의 영화 공개상영은 허락의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특약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한국 저작권법 제99조는 본 사안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논리가 상급법원에서도 그래도 받아들여진다면 영화수입사는 해당 영화에 삽입된 음악의 지역적 이용허락 범위에 관하여 철저하게 분석해서 대비해야만 한국에서 음악저작물의 공연권 침해 소송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7. 라이브러리 음악에 대한 저작인접권자 보상금분배 관련 판결 분석

가. 사건 개요

원고는 음원 및 음악저작권을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이다. 원고는 음산협을 상대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지상파 3사에 대한 방송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음산협은 음반제작자의 방송, 디지털음성송신, 공연보상금 징수 및 분배업무를 수행하는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되었으나 2021년 3월경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이 취소되었다. 이후 문체부 장관은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연제협')를 위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하였

50) 제99조(저작물의 영상화) ①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
1. 영상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각색하는 것
2.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것
3. 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방송하는 것
4. 전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전송하는 것
5. 영상저작물을 그 본래의 목적으로 복제·배포하는 것
6. 영상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영상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

다. 음산협은 2021년 4월 22일 위 보상금 업무와 관련한 권리를 연제협에 인계하면서 보상금 회계잔고를 연제협에 이관하였다.

소송 진행과정에서 음산협이 보상금 수령단체 자격이 상실되고 연제협에 이관된 사실이 밝혀지자, 음산협은 소송에서 탈퇴하고, 대신 연제협이 피고의 지위를 인수하게 되었다.

나.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① 음반제작자는 저작권법[51]에 따라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한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보상금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한 피고는 방송사업자들로부터 보상금을 징수하여 분배신청을 한 음반제작자들에게 보상금을 분배할 의무가 있다.

② 지상파 3사(KBS, SBS, MBC)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원고가 제작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였고 당시 방송보상금 수령단체였던 피고는 지상파 3사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기간 동안 방송보상금을 분배받지 못한 원고에게 방송보상금을 분배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지상파 3사에 대한 방송보상금으로 3,177만 2,628원을 지급해야 한다.

③ 원고는 방송보상금의 산정방법으로 원고 보유곡 사용량을 분배대상곡 사용총량에 포함시켜 곡 단가를 산정한 경우와 분배대상곡 사용총량에 포함시켜 곡 단가를 산정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고, 각 원고가 음반제작자로서 권리를 가지는 음반의 방송 횟수, 원고의 곡 단가, 지상파별 분배 금액을 제시하였다.

2) 피고 측(보상금 수령단체)의 주장

① 원고가 주장하는 음반들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자(음반제작자)인지 여부가 증명되지 않았다.

② 원고가 주장하는 보상금 분배액의 산출근거가 되는 곡 단가, 사용총량 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

51) 저작권법 제82조(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방송사업자가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원고가 주장하는 음반들은 라이브러리 음악(Library Music)에 대한 음반인데, 라이브러리 음악은 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판매용 음반'을 '상업용 음반'으로 개정한 저작권법의 개정 이후로 상업용 음반에 대한 보상금 징수 규정이 개정된 적이 없어, 라이브러리 음악에 대한 보상금을 징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보상금을 분배할 수 없다.

④ 또한 방송보상금에 대한 분배규정 역시 개정되지 않았는데, 라이브러리 음악은 일반 음악에 비해 대부분 곡의 길이가 짧고 특정 방송의 배경음악이나 시그널 등으로 사용되는 빈도가 일반 음악에 비해 현저히 많기 때문에 라이브러리 음악에 대한 보상금을 종전 분배규정에 그대로 적용하여 분배한다면 라이브러리 음악의 저작인접권자들이 일반 음악의 저작인접권자들에 비하여 과도한 이익을 얻게 되므로 형평에 어긋난다.

다. 법원의 판단

① 제반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음반들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자(음반제작자)인 점이 인정된다.

②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곡 단가, 사용총량의 산출근거로 제시한 내역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③ 특히 원고가 사용총량의 산출근거로 제시한 방송 모니터링업체의 핑거프린팅 방식의 모니터링자료는 그 신뢰도가 높지 않다. 핑거프린팅 방식으로 방송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 경우 추출된 오디오에 음성, 효과음 등이 섞여 파형이 달라지면 시스템에서는 음악사용 여부를 인식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점, 관련 사건에서도 방송 모니터링업체의 주·배·시 음악의 전자적 핑거프린팅의 정확성이 30-40% 정도에 불과하다는 전문업체의 사실 조회 회신이 있었던 점, 라이브러리 음원의 경우, 검출률이 일반 음악에 비해 굉장히 낮은 편이라는 취지로 전문업체의 사실 조회 회신 등을 근거로 법원은 본건 핑거프린팅 방식의 모니터링 자료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④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라. 해설

방송사업자가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저작권법 제82조 제1항). 상업용 음반이 방송에서 많이 사용되면 그

판매량이 감소하여 음반 판매의 기회를 상실하기보다는 오히려 방송이 판매량을 향상시키는 선전효과도 있는 것이어서, 음반제작자에게 배타적인 방송권 대신 일반적으로 예정된 이용의 범위를 초과한 사용에 의한 이익을 얻고 있는 방송사업자의 수익의 일부를 음반제작자에게 환원시킨다는 법익적인 균형론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고 있다.[52]

방송사업자가 방송에 제공된 모든 곡의 음반제작자를 찾아내어 보상을 해준다거나 반대로 음반제작자가 일일이 방송된 횟수를 따져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기술적,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법은 이러한 보상의 필요성과 보상 방법상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보상청구권의 귀속 주체와 보상청구권의 행사자를 분리하여, 그 보상청구권의 행사자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음반제작자의 방송보상금 청구권의 징수 및 분배 단체로 음산협이 지정되었으나, 이 사건에 보듯이 이 지정이 취소되고, 연제협이 2021년 4월부터 새로운 징수 및 분배단체로 지정되어 방송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다.

방송사들이 사용하는 음악은 크게 보아 일반 음악과 주제·배경·시그널 음악('주배시 음악')으로 나뉘는데, 주배시 음악의 경우 일반 음악과 달리 음악적 특징점이 부족하고 재생시간도 짧은 등으로 인해 전자적 핑거프린팅 방식을 사용하여 모니터링할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건에서 문제가 된 라이브러리 음악은 독립적으로 연주하거나 가창할 목적으로 작곡되지 않고,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프로그램 등에 배경음악 등으로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창작된 음악을 말한다. 이러한 라이브러리 음악도 위와 같은 이유로 핑거프린팅 방식에 의한 모니터링 결과를 법원이 신뢰하지 않은 것이다. 주배시 음악에 대한 모니터링을 일반 청음의 방법으로 한다면 그 비용이 상당히 높을 것이므로 적절한 기술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방송사용보상금 징수규정 및 분배규정에 일반 음악과 구별되는 주배시 음악에 대한 징수기준 및 분배규정을 더욱 합리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OTT 업체 부담 음악 저작권료 관련 소송

가. 사건 개요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들이 정부의 음악 저작권료 인상 방침에 불복하

52) 허희성(2011), 『2011 신저작권법축조개설(하)』, 명문프리컴, 447면.

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22년 10월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업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9월 20일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음악저작권신탁단체가 OTT에 적용할 음악저작물사용료 요율을 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개정안을 제출하였고, 이에 문체부 장관이 개정안에 대하여 수정 승인 처분을 하자, OTT업체가 반발하여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개정안은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 OTT 회사에 2021년부터 요율을 1.5%에서 시작해 2026년 1.9995%까지 올리기로 하는 내용이다.

나.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은 이 사건 사용료 징수규정 제24조는 합리적 이유 없이 OTT 사업자를 다른 방송사업자나 종합유선방송 및 인터넷 프로토콜TV(IPTV) 사업자에 비해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고, 합리적 근거 없이 과다한 사용료를 부과하여 비례원칙에 위반되었는지 여부였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주된 서비스인 방송의 사용요율은 매출액의 약 1.2%로 OTT 사업자들의 주된 서비스인 영상물 전송서비스에 적용되는 비율인 1.5%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OTT 사업자들에게 적용된 사용요율이 크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징수 방법, 사용료 산정 방법과 정도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어 외국의 어느 한 사례를 들어 이 사건 규정의 적정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참고한 해외 사례는 세계적으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액이 가장 높은 국가들에 편중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와 같은 OTT 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의도로 편중된 사례들만을 참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액은 세계 9위로서 피고가 음악저작물 사용요율을 정함에 있어 세계 10위권의 해외 사례들을 참고한 것을 두고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음악신탁단체의 사용요율 신청을 수정 승인할 권한이 있으나,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사용요율 등 승인 신청에 대한 피고의 승인은 사인 간의 법률행위에 동의를 부여하여 그 행위의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키는 이른바 '강학상 인가'의 변형된 형태에 해당하고, 음악저작물의 사용요율을 정하는 것은 원래 사적 자치의 영역에 속하므로 피고는 민

간의 자율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정 승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음악신탁단체가 OTT 업체들과 음악저작물 사용계약을 맺고 매출액의 2%대의 사용료를 받은 바 있고, 그 사용료가 특별히 예외적인 까닭이 있어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상 OTT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신탁단체가 받고 있는 위와 같은 사용요율은 이 사건 규정의 사용요율을 정하는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해설

위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에 상고되었으나, 대법원은 2024년 1월 25일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려 결국 위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규정 제24조로 정해진 음악저작물 사용료가 과다하여 국내 OTT 산업이나 원고들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오히려 국내 OTT 업체 두 곳이 매출액의 2%로 신탁단체에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OTT 산업에 대한 일방적 고려 때문에 사용요율 등을 낮추어 권리자에게 돌아갈 몫을 줄이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다고 보았다.

위와 같은 법원의 결론은 확정되었기 때문에 국내 OTT 업체들은 징수규정 개정안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